

#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관한 국제법

국립식물검역소  
농림기좌  
유  
기  
열

< 1 >

이 지구상에는 약 500만종 이상의 곤충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중 해충이 농산물 생산에 입히는 피해는 평균 생산량의 5~15% 손실을 가져온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0억달러에 해당한다. 또한 농약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45억달러에 이르며 농약 살분무 장비에 드는 비용은 1억달러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병해충의 피해와 방제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크므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병해충이 미발생 지역에 유입 정착하는 것을 막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 대한 병해충이 국경선 넘어 유포 및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병충해의 방제책을 추진하는 공통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 헌장 제14조에 의거 국제식물보호협약이 1951년 제 6차 FAO총회에서 승인되어 1952. 4. 3일에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협약은 모든 국가의 식물보호 및 식물검역 법규의 입법근거가 되고 식물보호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식물보호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국의 식물보호를 위하여서는 본협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 1. 가입국 현황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국가는 본협약의 회원국이 될수 있다. 가입 희망국은 본협약에 서명, 비준 후 서명하거나 가입문서를 FAO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써 본협약의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FAO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비준 서명에 의한 회원국이 36개국, 가입문서의 기탁에 의한 회원국이 43개국으로 총 79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나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오스트리아, 바레인, 방글라데쉬, 바바도스,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캄프차, 덴마크, 도미니카, 에쿠아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동독, 서독, 그리스, 과테말라, 기이아나, 아이티,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에이레, 이스라엘, 이태리, 자마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로코, 베넬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소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아,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쥬엘라

### 가. 지역식물보호기구 현황

명	칭	설치 년도	회원 국수
1.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EPPO)	1951	35
2.	Organismo Internacional Reg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OIRSA)	1955	7
3.	Plant Protection Committee for the South East Asia and Pacific Region(PPC/SEAP)	1956	21
4.	Inter-African Phytosanitary Council(IAPSC)	1956	48
5.	Near East Plant Protection Commision(NEPPC)	1963	19
6.	Comité Interamericano de Protección Agrícola(CIPA)	1965	6
7.	Caribbean Plant Protection Commission(CPPC)	1967	17
8.	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NAPPO)	1976	3

## ◎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관한 고찰 ◎

유고슬라비아.

### 2. 지역식물보호기구현황

본협약 제 3조(보충협정) 및 제 8조(지역식물보호기구)에 의거 일정 지역의 식물보호활동을 증진 조정하고 지역내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는 데 상호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창설된 지역식물보호기구는 총 8개기구로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발달사

#### 가. 1951년 이전

1881. 11. 3일 포도의 대해충인 *Phylloxera vastatrix*의 방제를 위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포르투갈 및 프랑스등이 포도피륙세라 만연 방지조약을 체결한 것이 식물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효시이다. 그후 1889. 4. 15일에 스위스의 베른에서 그 협약에 대한 부칙이 채택되었으며 1929. 4. 16일 로마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rotection of Plants: ICPP)이 서명 발효되었다.

특히 1929 협약(ICPP)은 로마에 있는 국제농업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e)에서 6년간의

예비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졌으나 제 2차 세계대전과 식물보호분야의 급격한 여건변화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어졌다. 1929년 로마회의에 참석한 46개국중 단지 12개국이 ICPP에 비준 서명하였고 그후 5개국이 추가 가입하였다. 이들은 모두 현재의 협약이 발효되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나. 1951년 이후

1950. 5월에 FAO와 화란정부가 공동주최로 화란의 헤이그에서 FAO총회가 개최되어 회원국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을 취합분석하여 만든 협약안을 검토하였다. 동총회에서 그 협약안을 수락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1개월후에 미국과 캐나다의 식물보호 전문가들이 비공식으로 로마에서 회합을 갖고 그것을 재검토 하였다. 이것은 주로 국제식물검역규칙의 원칙과 행정사항을 취급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세계의 많은 권위있는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고 이것에 기초를 두어 1950년 FAO총회의 특별회기전에 새로운 협약안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새로운 협약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더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FAO는 그 새로운 협약안과 각국의 제안사항을 요약하

여 각국에 회람하였다.

그 다음해인 1951. 9월에 식물보호 전문가 회의에서 최종안을 성안하여 그 11월 제 6차 FAO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1952. 4. 3일에 발효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79. 11. 10~11. 29에 개최된 제20차 FAO 총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어 회원국의 수락문서를 접수중에 있다.

#### 4. 개정배경과 요지

국제식물보호협약은 1951년 승인된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된 일은 없으나 무역 및 수송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과 모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수출위생증명서를 포함한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협약의 개정문제는 시행 2년후인 1953년부터 대두되어 기술전문가들의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본협약의 이행상 문제점과 개정여부를 협의하였다. 1955년에는 본협약의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려 회원국들이 제안한 본협약의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 당시 자문위원회는 본협약을 좀더 실시해 본 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유보시켰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회원국 및 FAO 지역식물보호기구는 본협약이 안고 있는 모순점과 결함을 더욱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특히 그

들은 현행 수출식물 위생증명서는 소비용, 가공용 혹은 저장용 식물은 등한시 하고 내용이 재식용 또는 번식용 위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용, 가공용, 혹은 저장용 식물에 대한 완벽한 검사와 이들 식물에 한마리의 병해충도 부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검역처리의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개정하고 증명서 내용이 모호하여 해석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1969년 제15차 FAO 총회에서 본협약 특히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관한 내용을 재검토하였고 1971년 제16차 FAO 총회에서는 본협약 개정을 위하여 임시자문단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FAO는 1973. 7. 9~7. 13까지 로마에서 임시자문단회의를 개최하여 20년이상 시행되어온 국제식물보호협약을 검토한 후 본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회원국이 본협약의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1974. 4. 11일에 회의결과를 회원국에 통지하였다. 같은 해 9. 1일까지 28개 회원국과 3개 지역식물기구로부터 회신이 왔으며 1973년 임시자문단 및 FAO 식물방역관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이들 회신내용과 개정안을 검토하고 구체화시켜 그 결

과를 회원국에 통보하였다.

1973년 임시자문단의 건의에 따라 1976년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급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1974년 FAC 자문단이 제출한 개정안과 회원국 및 지역식물기구로부터 받은 개정안 내용을 심의하여 개정안을 확정시켰다. 이 개정안 중에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출위생증명서와 재수출위생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1976년 정부급 자문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FAO 법률문제위원회(Committee on Constitutional and Legal Matters; CCLM)의 적법성에 관한 심의절차를 거쳐 본협약의 개정절차에 의거 1977년 제19차 FAO 총회에 승인을 위하여 상정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일부 내용 특히 검역해충의 개념도입과 위생증명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제19차 총회에서는 개정안의 최종승인을 제20차 총회로 연기하고 그 동안 더욱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FAO 사무총장은 개정안 및 제19차 총회에서 논의한 주요 요점을 본협약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통지해주고 관계국들은 계속 이를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출할 것도 건

의하였다. 또한 FA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G)로 하여금 모든 국가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개정안과 각국의 개선안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40여개 관계국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안을 제안하여 음에 따라 FAO 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1979. 4월 제 5차 농업위원회가 구성한 국제식물보호협약 임시자문단이 이들을 검토하였는바 이 임시자문단은 23개 회원국과 3개 비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검토결과 임시자문단은 본협약 개정안에 동의하였고 FAO 농업위원회(COAG)가 이 개정안에 배서하여 1979. 6월 제75차 이사회 회의를 거쳐 1979. 11월 제20차 FAO 총회에 상정 승인되었다. 승인된 개정안은 현재 회원국으로부터 수락문서를 접수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0. 11. 4일자로 동개정안에 대한 수락문서를 10번째 국가로 FAO에 공식접수시켰다. 본개정안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한 후 30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제20차 FAO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결하였다.

**가. 대상식물의 확대**

검역대상식물의 범위에서 지금까지 제외된 일부 종자를 검역대상식물에 포함시켰고 식물성산물에는 제조된 식물성산물도 포함시켰으며 회원국은 저장고, 수송수단, 용기, 식물해충을 잠복시키거나 만연시킬 수 있는 물질까지 검역대상식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나. 검역해충 설정**

종래의 병해충(Pests and diseases)을 일반병해충(Pest)과 검역병해충(Quarantine Pest)으로 구분하여 식물검역의 대상 병해충을 명백하게 하고 병해충 검색에 효율화를 기하였다.

**다.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 사용**

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수출식물위생증명서와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서 식물의 재수출에 따른 검역상의 문제점을

**라. 수입요구조건의 보완**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병해충의 목록을 명시하고 수입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항을 수출국정부에 적절하고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재식용이 아닌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 대한 수입요구조건은 최소한으로 적게해야 하며 생물학적 방제용 미생물을 수입할 때도 충분한 검역조치를 취하도록 수입요건을 보완하였다.

**마. 정보교환의무 강화**

수입요구조건 및 수입금지 병해충의 변경과 같은 새로운 사항이 발생시는 회원국은 즉시 FAO지역 식물보호기구 및 모든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FAO는 FAO지역 식물보호기구와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는등 통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교환 의무를 강화하였다.

<다음호 계속>



**정 정(訂正)**

본지 4월호 내용중 『제조제로 인한 약해를 방지하는 방법』(p.47~p.50)은 쾨스트·덴드(棟) 한국지점의 李啓洪씨가 번역한 글임을 정정, 알려드립니다.